## 2023학년도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

- 관련 근거 :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 <2021.11.02.개정>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구성 기본 계획<2023.02.17.>

조항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5조 임원등의 구성	② 회장,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.  ⑤ 감사는 회장, 부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.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.	<ul> <li>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. 다만, 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.(※가정통신문에의한 회신,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, 우편투표등)</li> <li>⑤ 임원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없다.</li> </ul>	경기도 규정 내용에 맞춰서 개정